

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, '금속추출용 잔재물'로 분류 결정

- 관세청,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
- 전기차용 폐배터리 파우더, 안면 리프팅 기술 물품 등 17건 품목분류

□ 관세청(청장 고광효)은 지난 2월 20일(목) 개최된 2025년 제1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*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, 해당 내용을 반영한 「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」 개정안을 3월 24일(월)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.

*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,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

□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우선 “블랙매스*(black mass)” 또는 “블랙파우더**(black powder)”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와 관련하여,

* 재사용이 불가능한 리튬이온전지와 셀 제조공정 부적합품을 전처리 공정을 통하여 얻은 검정 분말

** 제조공정 중 발생한 부적합 전구체, 부적합 활물질, 부적합 전극을 파·분쇄하여 선별한 검정 분말

< 쟁점물품 사진 >



* Black mass



** Black powder

○ ▲금속추출용 잔재물(제2620호, 기본세율 2%), ▲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공업 조제품(제3824호, 양허세율 6.5%), ▲전기·전자 폐기물(e-waste, 제 8549호, 기본세율 8%)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였다.

-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,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.

○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, 니켈, 코발트, 망간 등의 **유가금속(valuable metals)** **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**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2620호의 “**금속추출용 잔재물**”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.

○ 이번 결정은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(e-waste)이 아닌 재활용 자원임을 확인한 것으로, 2026년 시행 예정인 「유럽연합(EU) 배터리 여권법*」 등 **순환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발맞춘 조치**로 볼 수 있다.

* 유럽연합(EU) 내 유통되는 배터리의 생산, 이용, 폐기, 재사용, 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기록·공개하는 제도로, 환경규제에 부합한 배터리만 역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함

- 향후 관세청은 기획재정부, 환경부와 협력하여 재활용 배터리 및 관련 물품의 원활한 유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**수출입 품목번호 신설을 추진할 계획**이다.

② 다음으로,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해 “침(바늘)” 내부에 “**붕합사**”가 결합된 물품을 제9018호 의료기기(기본세율 8%)가 아닌 제3006호 **살균한 의료용 붕합사**(양허세율 0%)로 결정하였다.

○ 해당 물품은 피부에 미세한 침을 삽입하여 붕합사를 통해 주름을 개선하는 물품으로, 침은 붕합사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제거되는 반면 붕합사는 삽입 후 피부 속에 남아 주름 개선의 기능을 하므로 붕합사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.

○ 이번 결정은 붕합사를 포함한 다양한 미용 치료용 제품의 **명확한 기준을 마련**하여 관련 기업들이 더욱 **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**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**공정하고 투명한 품목 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**하여 품목분류의 **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**해 나갈 계획이다.

-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“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*도 운영 중”이라며 “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”고 당부하였다.

*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,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에서 신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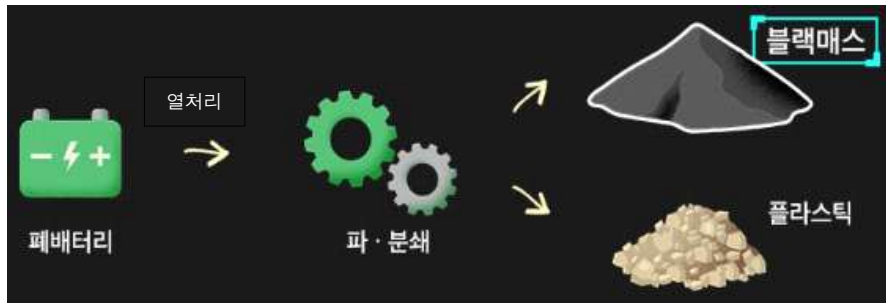
붙임 1.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

2.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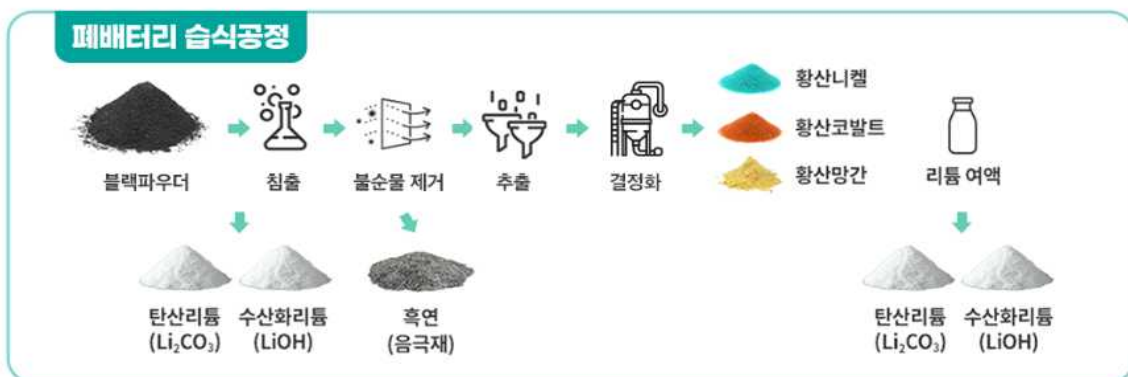
담당 부서	심사국 세원심사과	책임자	과 장	오현진 (042-481-787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선민 (042-481-7642)



- 전처리 공정 : 제조공정 부적합품과 재사용이 불가능한 배터리를 분말 형태로 회수하기 위한 공정



- 후처리 공정 : 블랙파우더 또는 블랙매스에 함유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공정(습식 또는 건식)



(자료출처 : SK ecoplant)

연번	대상물품	결정
1	레이더 골프용품	8526.10-9000(양허세율 0%)
2	Cobalt acetylacetonate	2914.19-0000(양허세율 5.5%)
3	돈코츠 라멘 스프 등	2104.10-1000(기본세율 18%)
4	Denkacare Vitalvit	2309.90-1099(기본세율 5%)
5	대두 유박	2304.00-0000(양허세율 1.8%)
6	핫케이크	1905.90-1030(기본세율 8%)
7	돼지감자 차 티백	2101.30-9000(기본세율 8%)
8	배터리 파우더	2620.99-0000(기본세율 2%)
9	블랙매스, 블랙파우더	2620.99-0000(기본세율 2%)
10	분리수거용 백(bag)	3924.90-9000(양허세율 6.5%)
11	의료용 살균한 봉합사	3006.10-1020(양허세율 0%)
12	블라인드 bottom bar end cap	3925.30-0000(양허세율 6.5%)
13	블라인드 end cap	3925.30-0000(양허세율 6.5%)
14	알까닭 등 완구	9503.00-3700(기본세율 8%)
15	엘리베이터용 벨트	7312.10-2099(양허세율 0%)
16	CALCIUM SILICON CORED WIRE	7202.99-9000(기본세율 3%)
17-1	참깨 바*	1704.90-9000(기본세율 8%)
17-2	캐러멜 팝콘*	1704.90-9000(기본세율 8%)
17-3	착채*	2005.99-9000(기본세율 20%)
17-4	냉동한 미성숙한 대두*	1201.90-9000(양허세율 487%)
17-5	긴소매 남녀공용 아웃터 의류*	6102.30-1000(기본세율 13%)
17-6	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*	7007.11-1000(기본세율 8%)
17-7	스프레이 디스펜서*	8424.89-9000(기본세율 8%)

* 세계관세기구 HS위원회 결정 및 HS 분류의견서 국내 수용에 따른 변경대상 물품

<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>

- ❖ **(기능)** 수출입자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결정 지원을 위한 기구로서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근거하여 1982년부터 설치·운영 중. 수출입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 또는 일선 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해 최종 품목분류 결정을 함
- ❖ **(구성)** 관세법과 상품학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(교수, 관세사, 시민단체 등)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(기획재정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관세청) 등 41인으로 위원단 구성. 회의마다 16인의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,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맡고 있음